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 처리요령(Ⅱ)

교통사고란 사고장소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자동차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충돌사고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되었거나 피해물이 생긴 것을 말하며, 지난 호에 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처리 요령에 대해 소 테마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차량의 정지사고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최단거리 내에서 차량을 정지 시킨다. 자동차끼리의 접촉, 충돌사고이든지 또는 자동차와 사람의 접촉사고 이든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것은 몇번을 강조해야 할만큼 중요하다.

가급적 최대한 짧은거리로,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요령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차량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나타낼수 있는 사고장소의 각종 위치(충돌지점이나 충격부위) 등의 사고 흔적, 증거를 될수 있는 한, 잘 보존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른 도로에서는 후속차량과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옮겨 정지시켜야 하며, 일반도로에서는 차량고장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후속 차량이 안전하게 피해 갈수 있도록 어떤 형식으로든 위험표지 조치를 취하여 또 다

른 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부상자 구호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운전자는 자기의 과실유무를 떠나 반드시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있든 없든 교통사고로 인명이나 물건에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이상은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일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된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시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피해자를 후송할 때에는 가능하면 사고 운전자 본인이 운전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당황하는 마음에서 또 다른 2차 사고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상자 후송을 도와주는 차량 또는 사람의 차량 번호,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메모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경우 112나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부상자 구호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자동차에 충격되어 횡단보도 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에 대한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가버렸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8. 24. 판결 93도1384)

②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약 40미터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떠나 자기가 피해자 인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0. 22. 판결 91도2134)

③ 그러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사고현장에서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도 될 경우 또는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 등으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등을 취할수도 있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며 운전자가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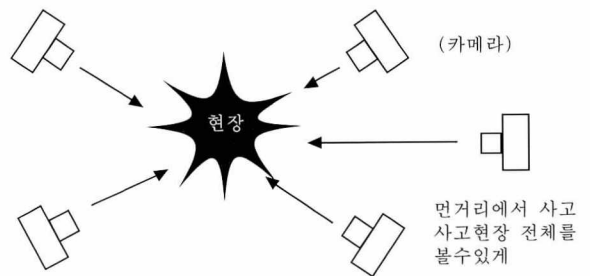
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박이등을 켜고 시속 약 10km의 저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이 규정하는 도주의 의사가 있다거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14. 판결94도460)

사고현장의 표시

① 우선 전체적으로 사고현장을 살펴볼수 있도록 약간 먼거리에서 또 대각선 방향에서 사진을 찍는다.

② 기타 사고현장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물을 수집한다.

③ 스프레이가 없는 경우에는 돌이나 못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분무기(스프레이)사용요령

